멸종위기종 터전 짓밟은 골프장 공사 어미와 떨어진 새끼 삵 3마리 어디로

함평서 인부들이 발견해 알렸지만 시공사는 발견지점에 가져다 놔

법정보호종 조치않고 땡볕 방치…"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가능성"

전남의 한 골프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끼 삵 3마리가 어미와 떨어진 채 발견됐지만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된 뒤 종적을 감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업자 측은 착공 전 법정보호종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보호책 시행을 환경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1일 광주일보 취재결과,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40분께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원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벌목 작업 인부들이 새끼 삵 3마리를 발견했다. 새끼들은 골프장 신축 부지에 위치한 동산 중턱에서 발견됐으며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광주일보가 확보한 당시 영상을 보면 삵들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상태의 새끼들로 바닥에 쌓여있던 나뭇가지들 사이를 굴러다니고, 바로 아래에선 굴착기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젖먹이 새끼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야생동물보호 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삵들의 서식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인부들은 새끼 삵들을 발견한 뒤 현장사무소로 가지고 내려와 사업시행자인 대성베르힐컨트리클럽(주)과 원청(시공사, 디에스종합건설) 측에 알렸다. 이후 시공사 측은 인부들이 가져온 동물이 법정보호종인 어린 삵들임을 알아보고 최초 발견지점 부근에 가져다 놓았고, 그 이후로는 새끼 삵들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여름 땡볕 아래에 새끼 삵들이 방치됐다는 점에서 폐사 가능성도 있다.

현장 인부들과 시공사 측 관계자들이 삵을 발견한 뒤 즉각 법정보호종임을 알아본 것은 이보다 석달 앞선 5월 같은 사업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동물 출몰 사실이 환경단체 카메라에 의해 확인되면서 서식지 파괴 논란이 일었고, 사업자 측이 "출몰은 사실이나 서식지는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잡음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법정보호종 발견 시 취해야 할 행동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공사 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는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이범기 사무국장은 "(제시된 사진은) 새끼 삵들로 보인다. 어미가 없는 상태의 삵이 발견되면 이를 전담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미 신고 시 고발조치 사안"이라고 했다.

시공사 측 현장책임자는 "법종보호종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법정보호종들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정병호 기자 kh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대중제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에서 지난해 8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끼 삵 3마리(흰색 점선 안)와 서식지가 발견됐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독자 제공〉

유명무실 환경영향평가

법정보호종 발견해도 신고 안하면 그만?

개발 사업자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방식, 실효성 의문

새끼 삵들이 인부들에게 발견됐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폐사됐을 가능성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커진다.

환경당국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함평군) 측에 십여 가지의 의무사항이 담긴 협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막상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원 166만㎡에 대중제 골프장(27홀) 조성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함평군)에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문제가 불거진 동식물 관련해서는 사업지 내외에서 법정 보호종(수달·삵·황조롱이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정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승인기관과 사업자 양측에 주지시켰다. 동물들의 번식기(5~6월)와 야간에는 공사를 삼가고, 공사 인부들의 야생동물 포획·살생 금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형동물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 사업지구 내 이동 통로나 터널 등을 설치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 현장에선 새끼 삵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식지 파괴 논란까지 일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환경당국이나 승인기관이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측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방식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당국이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후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 측은 이를 이행하게 돼 있다. 승인기관은 관리·감독 의무를 갖지만, 인력 및 감독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새끼 삵' 논란 역시 도급공사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도급사와 수급사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더라면 수면 위로 떠 오르지 못하고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자 측이 위반 사실을 감추면 전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무원 집 지붕 노란색으로' 유두석 장성군수 무혐의 처분

경찰이 '옐로우 시티'를 표방해 계약직 공무원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유두석 장성군수를 혐의 없다고 판단,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1일 장성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9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유 군수에 대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과, 도색작업을 위한 동의서를 위조 했다는 혐의로 5개월여간의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2주 전 유 군수를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붕을 바꾸라고 요구한 점은 유 군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 요구일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다.

강요죄를 적용하기에도 폭행과 협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교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유 군수도 교사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자택 지붕 색깔을 변경하라고 유 군수가 지시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에 지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채무자 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대법원서 무죄 확정 풀려나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1심을 깨고 무죄로 풀려났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남성)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가 반대신문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씨가 1심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경 수사 단계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